2023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동계워크숍

# 민선 2기 체육회 출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회학적 전망

일시 : 2023년 02월 06일(목) 14:00~17:00

장소 :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 강의실

주최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주관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네트워크연구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 개회사

존경하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학회의 첫 행사인 동계워크숍을 창의, 개발, 봉사의 교육이념 아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1990년 발족한 이래, 스포츠가 사회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 배양과 실천적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사회변동과 시대적 요구에 항시 부응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포츠사회학의 쓸모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깊어가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사회학의 학문적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초연결 사회라는 미래에 대응하고 새로운 연구주제가 부상하는 점에서 우리 학문의 쓸모가 여전함을 확신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지구적 차원의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학적 통찰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로부터 스포츠에 개입하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적 속성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사회학이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동계워크숍의 주제 ‘민선 2기 지방체육회 출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회학적 전망’은 그 과업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실현의 중심축인 민선 체육회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워크숍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대한체육회 심상보부장님과 토론해 참여해 주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종우 위원장님, 경기도 위원석 체육정책 자문관님, 충청북도체육회 김세명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계워크숍을 시작으로 학회의 여러 사업을 충실하게 준비하고자 하오니,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6일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 서 희 진**

# 환영사

희망으로 시작한 2023년도 어느덧 2월의 중반에 이르러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오늘, 충남대학교에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의 동계워크숍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구와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워크숍을 위해 충남대를 찾아주신 서희진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는 현대인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 속, 스포츠는 개개인의 건강과 삶에 직결된 일상과 뗄 수 없는 요소이면서 경제와 산업, 사회 통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는 스포츠와 사회학이라는 전통적 범주의 학문 영역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다학제적, 융복합적 연구를 선도하며 학문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스포츠사회학회가 ‘민선 2기 지방체육회 출범 :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회학적 전망’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을 통해 민선 체육회장 도입의 취지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공적인 민선 지방체육회의 발전과 이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워크숍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충남대를 찾아주신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충남대학교 총장 이 진 숙**

# 축 사

존경하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서희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한국체육학회 회장 이한경입니다. ‘2023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동계워크숍’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사회 곳곳에 미친 영향은 스포츠 분야 역시 온·오프라인을 거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AI와 혼합현실 기술의 발달로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스포츠 환경의 변화 속에서 2023년 임기 4년의 민선 2기 지방체육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체육회가 전문체육의 발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민선 2기 지방체육회 출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회학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워크숍을 통해 우리 모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학계와 단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성공적인 민선 지방체육회를 위한 값진 고견을 부탁드리며, 워크숍을 준비해 주신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사무국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6일

**한국체육학회 회장 이 한 경**

# 목 차

## [ 주제 발표 ]

지역체육회 민선 1기의 명암과 성공적인 2기를 위한 현실적 제언
심상보(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부장) ······ 01

## [ 토 론 ]

1. 성공적인 민선 지방체육회를 위한 학술적 및 현실적 전망
한종우(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학사운영위원장, 전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 ··· 16

2. 지자체 입장에서 바라본 성공적인 민선 지방체육회의 조건
위원석(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자문관) ······ 36

3. 지역 체육 현장에서 경험한 지방체육회 민선 시대
김세명(충청북도체육회 정책개발부 부장) ······ 46

「주제 발표」

# 지방체육회 민선 1기의 명암과 성공적인 2기를 위한 현실적 제언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부장

# 지방체육회 민선 1기의 명암과 성공적인 2기를 위한 현실적 제언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부장

목차

1. 지방체육회의 태동과 변천사
2. 지방체육회 현황
3. 민선1기 지방체육회 평가
4. 성공적인 민선2기 지방체육회의 과제

## 1 지방체육회의 태동과 변천사

지방체육회는 우리나라 **지방체육중심추진단체**로서 지방체육회의 설립은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체육회가 설립된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자

1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반포***(1895.2.2.)에 이어 한성사범학교가 설치(1895년)되면서 **체조 과목이 정식종목으로 채택**,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 스포츠들이 국내 유입**

| |
|---|
| *교육입국조서 :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특별조서<br>-신교육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실용을 추구하며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많이 설립할 것을 규정<br>-지금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근대적 학제의 시작 |

- ○ 국민들이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건강한 몸이 곧 튼튼한 국가를 만든다)하며 10년 후 체육단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2 조선체육회 창립(1920.7.13.) 이전 **체육단체**(1906.~1909.)

- ○ 대한체육구락부(1906.3.11.), 황성기독청년회 운동부(1906.4.11.), 대한국민체육회(1907.10.15.), 대한흥학회(1909.1.10.) 등

3 경술국치(1910.8.29.) **을사늑약***

○ 일제 대한제국 병합, 외교권 박탈, 무단통치, 언론탄압(한성신문과 대한신문 폐간,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개칭후 편집진 일본인으로 교체)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의 식민지가 됨

4 **체육단체들의 명멸**(1910~1919)

○ 체육단체들의 제대로 된 활동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무단정치로 체육단체가 명멸한 것으로 보임

5 **미국 윌슨 대통령 평화원칙 발표(1914.1.8.)**

○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전쟁종결을 위한 14개조 평화 원칙 발표

- 발표 내용 중 민족자결주의*의 선언은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에게 독립의지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3.1운동의 도화선이 됨

*민족자결주의 : 식민지나 점령지역에서의 피지배 민족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 즉 민족자결을 인정해야 한다.

6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1919.3.1.)과 함께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남**

○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무단정치에서 문화적인 방법**(언론·출판·결사·집회 자유 허용)으로 식민통치를 하겠다고 천명

*조선일보(1920.3.5.), 동아일보(1920.4.1.) 등 민족 언론 신문이 창간. 1922.9월 전국 청년단체 759개, 종교단체 488개가 조직되어 활동 ⇒ 조선체육회의 창립도 시대적인 흐름

7 **조선체육회 창립**(1920.7.13.)

○ **(조선체육회 창립 배경)** 도쿄유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모국을 방문하여 국내체육단체와 교류전 및 운동경기 도입

*1909 ~ 1941년까지 야구 10차례, 축구 12차례, 정구 10차례, 권투 5차례, 럭비와 육상 각 2차례 교류전 실시

- 특히 도쿄유학생들은 **올림픽에 관심**. 올림픽은 세계인의 이목을 한데 모을 수 있어 **조선의 문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

○ **(조선체육회 창립) 야구선수 출신 일본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체육회 결사의 움직임. **올림픽출전**과 **선수육성** 및 체육을 체계 있게 관리하고 **통괄 조정**할 수 있는 **전국적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에 더해 **동아일보**에서 세차례 논설로 **조선체육회 설립의 당위성 설파**(첫번째 논설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 두번째 논설 "동지를 규합하라", 세 번째 논설 "경비를 변통하라")

- 마침내 1920.7.13. 오후 8시 인사동에 있는 중앙예배당에서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⑧ **조선체육회 강제 해산**(1938.7.4.) **일제의 강압에 의해 조선체육회 강제 해산**

⑨ **조선체육회 재건**(1945.11.26.) 1945.8.15. 광복 이후 조선체육회 재건

⑩ **대한민국 정부 출범**(1948.8.15.)에 따라 조선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개칭**

○ 이상과 같이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조선(대한)체육회의 지부(회원)인 지방체육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⑪ **조선(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 조선체육회 창립당시 회칙은 발견되지 않아 창립당시 지부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음

○ 다만, **1924년 개정된 회칙**에는 **지부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1924년 당시 조선체육회 박창하 위원장이 전국 지부 설립에 의욕을 보였으나, 일제가 조선체육회의 전국 **지부 설립에 집요한 방해**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부 설립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조선체육회 회칙(1924.7.1.)
> 제8장 **지부**
> 제21조 본회 **회원 10인 이상 거주하는 지방에서 지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22조 지부의 회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정함

○ 1938.7.4. 조선체육회 해산 전 까지 대전체육회(1927.3.5.), 충남체육회(1927.8.14.), 부산체육회(1928.12.1.), 신의주체육회(1932.5.), 인천체육회(1936.1.1.) 등이 지부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며, 1945.8.15.광복을 전후로 지방체육회가 설립되었음

○ 대한체육회 사단법인 설립허가(1954.3.16.)로 정관이 제정(1954.6.20.)되었으며, 동 정관에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체육회와 같은 체계의 회원 지방체육회의 조항이 마련됨

> 대한체육회 정관(1954.6.20.)
> 제3장 가맹단체 및 회원
> 제4조 본회는 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가맹단체 및 회원으로 조직한다.
> 1. 각종 운동경기 또는 체육운동을 통할 대표하는 전국적 중추기관으로서 본회가 인정한 운동경기단체
> **2. 서울특별시 및 각 도 행정구역을 단위로 체육운동을 통할 대표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본회가 인정한 단체**

[시도체육회 설립일]

| 단체명 | 설립일 | 단체명 | 설립일 | 단체명 | 설립일 |
|---|---|---|---|---|---|
| 서울특별시체육회 | 1953. 2. 20. | 울산광역시체육회 | 1997. 7. 15. | 전라북도체육회 | 1947. 3. 13. |
| 부산광역시체육회 | 1963. 3. 17.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 2012. 7. 10. | 전라남도체육회 | 1945. 8. 14. |
| 대구광역시체육회 | 1981. 7. 20. | 경기도체육회 | 1950. 6. 10. | 경상북도체육회 | 1949. 1. 1. |
| 인천광역시체육회 | 1936. 1. 1. | 강원도체육회 | 1946. 5. 1. | 경상남도체육회 | 1945. 12. 22. |
| 광주광역시체육회 | 1986. 11. 1. | 충청북도체육회 | 1946. 3. 15.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 1951. 6. 15. |

⑫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통합(2016.3.7.)**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어 한국 체육 패러다임 전환

○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던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으며, 상위단체 통합에 따라 종목단체, 시도체육회(17시도), 시군구체육회(228개)도 2015.12.~2016년도에 전부 통합

⑬ **지방체육회 민선화**(2020.1.15.)

○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지방체육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였으나, 지방체육회장의 지자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19.1.15.)됨에 따라 민선화 됨

| |
|---|
|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br>부　　칙<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법개정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체육회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방체육회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지방체육회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
- **(법개정 취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를 이용하는 문제 해결 등
- **(민선 회장 선출)** 동 법률 개정에 따라 2020.1.15.일을 기준으로 지방체육회(17시도, 228시군구) 민선 신임회장 선출 완료

## 2 지방체육회 현황

① **설치 현황**

○ **(시・도체육회)**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17개 시・도체육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시・군・구체육회)**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② **지방체육회 법적 지위**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단체**

| | |
|---|---|
| 국민체육진흥법<br>제2조제9호 가목 | ·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br>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지방체육회) 2항에 따른 법인**

-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법인 중 '특수법인' (特殊法人)*

* 특수법인의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공공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의 총칭이므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률에서 해당되는 '공공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시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대한체육회의 회원**, **시군구 체육회**는 시도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시도체육회의 회원**

| | |
|---|---|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제4항 | · 지방체육회 중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군·구체육회는 시·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7개 시도체육회, 21개 시군구체육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직자"**에 해당

*거창군,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동해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청주시, 춘천시, 평택시, 포천시, 포항시, 홍천군, 화성시

| | |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br>4.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

③ **지방체육회의 설립근거 및 역할**(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 정관)

ㅇ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체육회는 시도체육회 정관, 시군구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 정관에 목적 규율

| |
|---|
|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br>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br>2. 해당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br>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br>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br>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br>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br>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br>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br>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br>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br>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br>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br>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br>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br>④ 지방체육회 중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군.구체육회는 시.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br>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br>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br>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br>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 지방체육회의 재원

○ ▲국가재정으로 지원되는 **국고** 예산(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지방비** 예산(지방정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단체 **자체** 재원

○ 재원 구성 요소별 총 재원대비 점유비율은 지방비 예산이 약 80%차지

- 지방체육회에 지원되는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으로 **▲국고로부터 배정된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재배정된 예산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교부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등으로 구성

**[2022년 지방체육회 예산]** : 국고(기금 포함) 12.5%, 지방비 79.3%, 자체 8.2%

| 구분 | 예산(백만원) | | | |
|---|---|---|---|---|
| | 계 | 국비(기금) | 지방비 | 자체 |
| 총계 | 1,120,573 (100%) | 140,048 (12.5%) | 888,143 (79.3%) | 92,382 (8.2%) |
| 시도체육회(17) | 582,728 (100%) | 98,578 (16.9%) | 420,158 (72.1%) | 63,992 (11.0%) |
| 시군구체육회(228) | 554,514 (100%) | 63,066 (11.4%) | 458,994 (82.8%) | 32,454 (5.8%) |

5 지방체육회의 재정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

| | |
|---|---|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1항,2항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1항10호 |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해 사용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1항,2항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 |
|---|---|
| 지방재정법<br>제17조1항1~4호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br>**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br>**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br>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br>**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br>보조금 관리에 관한<br>법률 제6조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br>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조례(◯◯체육진흥조례 등)에서 정한 사업(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복지 등)을 수행하는 지방체육회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6 지방체육회 조직 현황

ㅇ 17개 시・도체육회는 산하에 228개 시・군・구체육회와 1,167개 시・도종목단체를 두고 있으며,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산하에 7,699개 시・군・구종목단체와 1,744개 읍・면・동체육회를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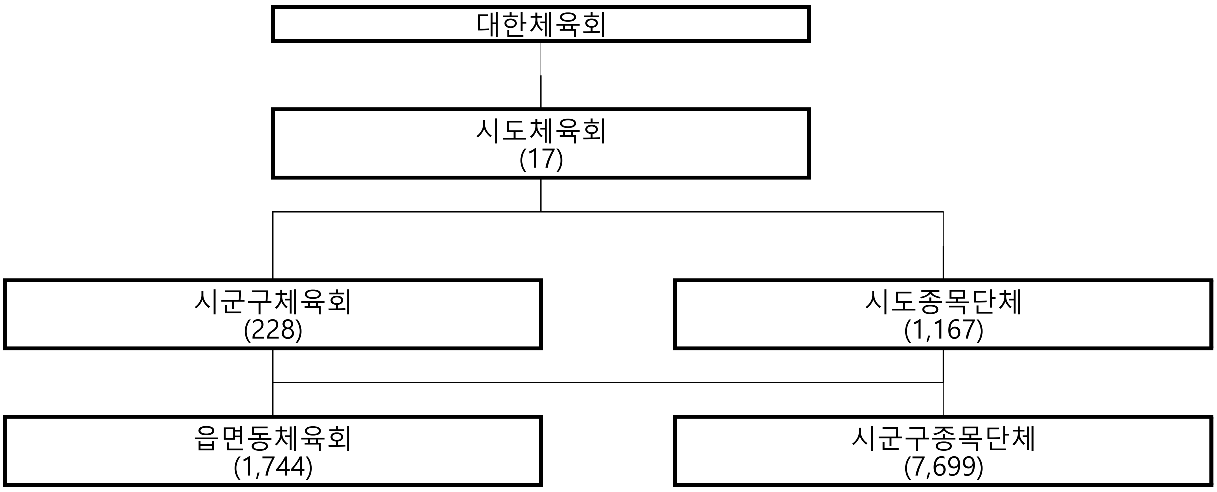


### 7 지방체육회 인력 현황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의 조직, 인력, 예산은 지자체의 인구 규모,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

| 구분 | 인력(명) | | | |
|---|---|---|---|---|
| | 행정인력 | 생활체육지도자 | 임원 | 종목단체 임원 |
| 계 | 1,442 | 2,734 | 11,511 | 177,320 |
| 시도체육회(17) | 605 | 15 | 986 | 23,340 |
| 시군구체육회(228) | 837 | 2,719 | 10,525 | 153,980 |

## 8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체육관련 주요업무]

**· 지방체육회 지도감독(조직, 인사 등) ▴지방체육회 보조금 지원 업무** ▴지방체육진흥 사업 지원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국내·국제대회 개최 및 유치 ▴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체육관련 조례·규칙 업무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체육비영리법인 허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관리(시·도청 사무) 등

○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라 ▴체육행정조직 사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사무처 직제, 정원관리 포함)를 하고 있음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를 구성·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방체육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에 지방체육회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지방체육회는 **학교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178개 교육지원청과 학교체육 업무 협업

# 3 민선 1기 지방체육회 평가

### 1 지방체육회의 민선화

○ 지방체육회장의 지자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9.1.15.)됨에 따라 2020.1.15.을 기준으로 민선1기 지방체육회장 245명 선출(체육회 자체 선거 운영)

### 2 지방체육회의 민선화에 따른 문제점 노출

**① 지방체육회의 임의단체로서의 한계 봉착**

○ 지방체육회의 법적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 미비

- 정부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임의단체로서 법·제도적 공신력 부족으로 불안정한 조직 구조

○ 임의단체로서 지자체와 갈등 발생 시 재정 확보에 취약점 상존

- 재정 안정성 저해 및 지방체육 전담조직으로서 위상 약화 우려

**② 지방체육회 설립 취지에 미흡한 부응**

○ 지역주민에게 체육진흥 효과를 제대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제도 설립 취지와 부합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나,

○ 비법인 형태의 법적지위로는 지방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 개발 및 추진 곤란

**③ 임의단체 지위로 권리행사 제약 등**

○ 법인 인감이 없어 자산취득에 어려움

○ 정부 체육시설 위탁 또는 각종 공모사업 시 단체자격을 법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 지원 한계 발생

### 3 민선1기 지방체육회 평가

**① 지방체육회 민선화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u>지방체육회 설립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u>

- **(법개정 일자)** 2020.12.8. 법 개정 공포 / 2021.6.9. 법시행
- **(법 개정 주요 내용)** ▲지방체육회 명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지방체육회 설립 근거 신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ㅇ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 **(법인설립 배경)**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인설립 의무화로 법인설립 실시
- **(법인설립 현황)** 245개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절차에 따라 법인설립 완료( '21.6.8.)

ㅇ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법개정 일자)** 2022.02.03. 법 개정 공포 / 2022.8.11. 법 시행
- **(법 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ㅇ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체육회를 관리 대상에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체육회 평가를 실시(2022~ ), 지방체육회를 중앙정부 제도권하에 두어 관리하여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체육회 지원에 대한 지자체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지원' 등에 관한 평가지표 신설을 계획 중에 있음. 평가지표가 신설된다면 지자체는 우수 평가를 받아 교부세 확보에 유리함으로 지방체육회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임

② 지방체육회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ㅇ 지방체육회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 원활한 공공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 지방체육회의 역량에 따라 지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체육진흥 사업 추진

③ 체육의 정치화 심화

○ **지방체육회장**이 지방체육회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정계로 진출**

- 정치 지망인이 지방체육회장으로 취임 시, 조직 사유화 및 선거 활동 등에 악용할 소지 다분
- 지자체장 인맥이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경우,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의 아바타로 전락

*제8회 전국동시선거(2022.6.1.)에서 8명의 지방체육회장이 선거에 출마하여 **6명 당선**

○ <u>지자체장의 지방체육회에 개입</u>

- 체육회장의 겸직 금지법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시행하였지만 지자체장은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체육의 이미지**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표**로 생각하여 지방체육회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사례 발생

・지자체장과 체육회장이 상호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 지방비에 의존하는 체육회에 대한 예산 삭감 및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이런 문제로 해당 지역은 체육시책 방향 등에 혼선을 가져와 이는 결국 해당 지역 체육발전에 악영향을 주었음

・다행히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방체육회가 특수법인이 됨으로서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의 목적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또는 유사 체육단체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행정권을 오남용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됨

**[대표적인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정치 관여 사례]**

**1) 경기도청**

○ 경기도체육회 민선 회장 선출 후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 실시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22건 행정조치
- 경기도체육회 업무 환수 조치(8개 사업) : 379억 중 229억(80%)
-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2) 대전 서구청**

○ 민선 2기 대전 서구체육회 선거에 대전 서구청장 개입

- 대전 서구청장은 후보자에게 직위를 제공하겠다고 매수하며 사퇴 종용

○ <u>지자체가 지방체육회의 **인사에 관여**함으로 체육회장의 **독립된 인사권 제약**</u>

・민선1기 17개 시도체육회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 출신 사무처장이 9명에 달해 시도체육회장이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함

④ <u>스포츠인권,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시스템 및 대처 미흡</u>

○ 2020년은 체육계 현장에서 갑질, (성)폭력 등 스포츠인권 유린사태, 체육단체 임직원 횡령 등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 및 지탄을 받음

○ 지역 현장에서 이에 대한 예방차원의 시스템을 갖추고 방지 노력을 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식 대응 및 안일하고 수동적인 태도가 도마에 오름

○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뒷받침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변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

## 4 성공적인 민선 2기 지방체육회의 과제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출]**

○ 민선1기 지방체육회장의 임기만료(2023.2월)에 따라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실시(2022.12.15. 17시도체육회장 동시 선거, 2022.12.22. 228시군구체육회장 동시 선거)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선거 실시

### ① 지방체육회 인력 확충 및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용

○ **(인력 확충)** 지방체육회는 지방체육 중심추진단체로서 체육회의 힘은 **맨파워를 기반**으로 일 잘하는 사무처(국)에 있다할 수 있음

- 245개 지방체육회가 **연 1조 이상**을 집행할 만큼 규모와 역할이 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수는 시도체육회는 평균 35명, 시군구체육회는 평균 3명에 그치고 있음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지방체육회 적정인력산정 연구 결과* 지방체육회 정규직 채용인력에 대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체육회: 17개 시도 총 129명이 부족, 시도별 평균 7.58명 추가 필요

 * 시군구체육회: 228개 시군구 총 547명이 부족, 시군구별 평균 2.39명 추가 필요

- 지방체육회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성공적인 민선2기 지방체육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

○ **(인재 등용)**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함

- 또한 체육에 문외안인 '논공행상' 인사를 배제하고 관계기관과 두루 소통하고 협업에 능한 인사를 중용하고, 직원 스스로도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해야 함
- 지방체육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체육회 직원 스스로 흔들림 없는 철학과 소명의식 필요

### ② 지방체육회장의 전문성

○ 민선1기에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 이제 민선2기 회장은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야 함

- 지방체육회장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협업력, 협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체육정책 능력과 비전, 조직 융합력과 집행력을 갖추어야 함. 그래야 정부의 관료주의와도 맞설 수 있고 지방체육의 밝은 미래도 앞당길 수 있음
- 지방체육회장의 당파, 정치색과 무관하게 스포츠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 예산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개발에 발벗고 나서야 함

[체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 조선체육회 여운형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성명서 발표(1946.2.26.)
조선체육회는 3천만 민중의 체육을 지향하는 대표기관인 도시에 우리들의 공기(公器)다. 그러므로 이는 어떤 개인의 체육회도 아니요, 일개 단체에 종속된 체육회도 아닌 것이다. 만약 체육회의 회장이나 간부로서 정치적 색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는 개인적 문제이고 체육회로서는 하등 관계할 바 아닌 동시에 체육회 자체가 색채를 갖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체육회는 불편부당임을 이에 성명함

### 3 스포츠와 정치의 공존과 협업

ㅇ 당초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임

- 지자체는 지방체육회 법인 인가단체로서 지방체육회를 관리·감독하고 예산권을 가지고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적 관여를 할 수밖에 없음

ㅇ 지자체와 지방체육회가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공존과 협업 관계로 전환되어야 함

- 지자체와 지방체육회는 지속가능한 스포츠발전 목표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훌륭한 협치, 즉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것임

ㅇ 지자체도 굿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통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체육회의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함

### 4 중앙정부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비중 확대

ㅇ 지방체육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운영비(인건비 및 사무처 운영비) 지원은 시도체육회 3%, 시군구체육회 5%에 그침. 나머지 예산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음

ㅇ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 확대는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 ▲지방체육회의 목적사업 안정 운영 도모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갈등 소지 억제 ▲체육정책 전달력 및 일관성 수단 유지 등

ㅇ 중앙정부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 5 지역 주도의 스포츠 기획 및 실행

ㅇ 지역 중심의 스포츠 정책 추진 일환으로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체육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야 함

ㅇ 지방체육회 특성과 색깔에 맞는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문화, 교육, 관광, ESG 사업과 연계하고, 지역 경기를 부양할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접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지역민들이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함

- 지역체육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지역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니즈 파악 → 사업 기획 및 예산확보 노력 → 사업성과평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개선 및 발전 노력 필요

⑥ 스포츠 선진문화 구축

ㅇ **조직 투명성 강화**

-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감사 실시 ▲경영공시 등 기관운영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 ▲전자문서시스템(회원단체 포함)을 통한 투명한 행정업무 추진 등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투명성을 높여 기관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함

ㅇ **청렴문화 확산**

- ▲지방체육회 내부직원의 청렴한 경영을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윤리강령제정, 행동지침 등 매뉴얼 마련, 부패근절교육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채용 제도 마련 ▲법제도를 적용한 규정(채용, 예산, 계약 등) 정비 ▲갑질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 ▲부패행위 점검 등을 통해 지방체육 전담조직으로서 청렴한 스포츠 행정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ㅇ **스포츠인권 향상**

- 스포츠폭력 등 지역 스포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포츠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담당조직 또는 전담자 구성, 현장점검/교육/상담 등) 필요

ㅇ **스포츠비리 처분 노력**

- 사전예방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비리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ㅇ **회원단체 및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선진화 지원**

- 회원단체와 소관 직장운동경기부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행정인력 지원, 사무공간 마련, 평가체계 마련, 규정보완 등) 필요

⑦ 지방체육회 알리기 운동 전개

ㅇ 지역주민이 지방체육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 지역 체육단체로서 대표성 홍보(체육회 존재의 필요성, 브랜딩 강화)
- 민선2기 지방체육회의 새로운 비전, 역할 홍보
- 서포터즈, 홍보대사 등 온오프라인 적극 활용 홍보

ㅇ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결국 지역주민을 지방체육회의 우호군으로 만들어 지방체육회가 외풍에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

「토 론 1」

# 성공적인 민선 지방체육회를 위한 학술적 및 현실적 전망

한종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학수운영위원장

전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

# 성공적인 민선 지방체육회를 위한 학술적 및 현실적 전망


한종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학수운영위원장

전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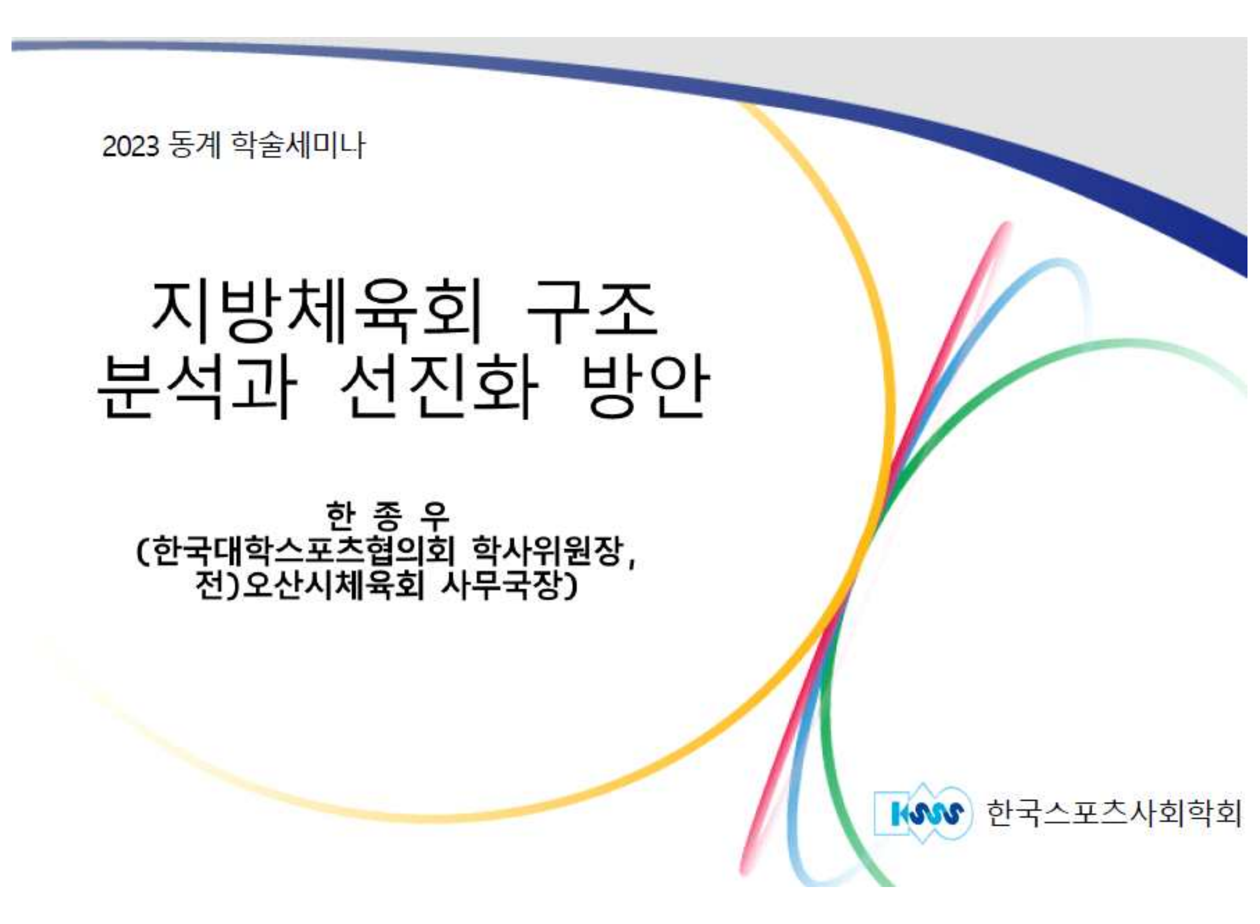

2023 동계 학술세미나

## 지방체육회 사업구조 분석과 성공적 운영방안

### CONTENTS

Ⅰ 지방체육회 일반사업 현황

Ⅱ 지방체육회 행정 운영 및 문제점

Ⅲ 지방체육회 문제점 분석및 개선(안)

Ⅳ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

Ⅴ 종합 정리 및 제언

KSSS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23 동계 학술세미나

# 지방체육회 사업구조 분석과 성공적 운영방안

## Ⅰ 지방체육회 일반사업 현황

KSSS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Ⅰ 지방체육회 일반사업 현황

## 1 일반 현황

**지방체육회 사업 일반 현황**

1. 대회사업
2. 육성사업
3. 보급사업
4. 장학사업
5. 시설개방사업
6. 교육사업
7. 경기력 향상 사업
8. 윤리, 공정성 함양 사업
9.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
10. 공모사업



# Ⅰ 지방체육회 일반사업 현황 분석

## 2 시사점

**지방체육회 사업 시사점**

1. 사회, 경제적 변화와 시민의 스포츠 참여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방체육회는 지자체에 의존한 대회사업에만 치우친 경향이 농후함
2. ICT,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산업 환경에 부응하여 효율적 행정 운영과 대회 운영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요망됨
3. 법정법인화 조직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걸맞는 독립적, 자율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안 마련 요망
4. 관행적 사업에서 탈피하여 항구적이고 선진적인 스포츠 사업 전개를 위해 시민스포츠 플랫폼 기반 구축 필요성 부각

2023 동계 학술세미나

# 지방체육회 사업구조 분석과 성공적 운영방안

Ⅱ 지방체육회 행정 운영 및 문제점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Ⅱ 지방체육회 행정운영 현황 및 문제점

### 1 지방체육회 현황 및 문제점(1)

*1.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실질적 가동 시급*

✓ 지자체장의 정파적 개입에 의한 민선 체육회 전환의 본질적 가치 훼손
✓ 체육회 역시 예산 확보의 자율성이 없어 독립성, 자율성 확보 어려움
✓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본질적 활동을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실질적 가동및 활성화 필요성 강조

*2. 자율성, 독립성이 어려운 높은 지자체 보조금 의존도*

✓ 대부분 체육회는 지자체로부터 약 85% 이상의 지방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체육 담당 공무원 성향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여건이 좌우됨
✓ 지자체장은 아직도 관변조직으로 의식해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도록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음.
✓ 보조금으로 수행된 사업수익금을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교부금법 개정 요청

*3. 지방체육회 와 종목단체의 균열 조짐*

✓ 시도의 경우, 전문체육 중심의 행정으로 생활체육은 뒷전이라는 피해의식으로 불만 토로.
✓ 반면, 시군은 생활체육 행정에 몰입하여 전문체육은 등한시하는 경향
✓ 민선회장 체계로 종목단체가 체육회를 패싱하고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는 기형적 현상 발생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Ⅱ 지방체육회 행정운영 현황 및 문제점

## 1 지방체육회 현황 및 문제점(2)

### *4. 민선 1기 선출직 회장의 불안정한 위상*

- ✓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예산권, 인사권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관선제보다 못하다는 평가
- ✓ 회장 출마 요건 강화 - 당원 출마 제한 강화, 명망있고 경험과 열정, 재정여건 등이 자격요건으로 압축됨
- ✓ 회장선거제도는 전회원 투표제, 추대에 의한 선출, 지자체장 런닝메이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 *5. 체육회 존재 이유 - 생애주기별 시민스포츠 정책 활성화*

- ✓ 자체 특화사업 개발및 추진 활성화 필요 - 시민리그사업, 수준별 클럽 보급 육성 사업, 다양한 교육사업, 다양한 형태의 지역 특화 리그대회 추진, 이해관계 단체간 안정적 거버넌스 구조 확립 등
- ✓ 비경쟁 스포츠 및 개인건강증진 운동참여자의 체육회 회원 가입 유도 방안 마련 추진 등 시민스포츠 확장 사업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 *6. 연령별, 수준별 클럽 시스템으로 구조화 필요성*

- ✓ 학교체육의 위축으로 전문체육 육성 구조 붕괴 위기, 클길럽동호인 활동 증가로 인한 분절화 현상 심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제기 - 연령별, 종목별, 수준별 , 유형별 스포츠클럽 구조화 구축
- ✓ 유,청소년 육성 보급단계 구조화 노력 필요 : 체험단계 - 입문단계 - 수준별 매니아단계 - 전문선수육성단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Ⅱ 지방체육회 행정운영 현황 및 문제점

## 1 지방체육회 현황 및 문제점(3)

### *7. 시군구체육회에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기능 재검토*

-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체 지도자 활용은 체육회 필요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
- ✓ 초등학교 지도사업, 종목별 클럽 동호인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 지역 클럽 육성및 보급 사업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어야 함
- ✓ 직종간 격차를 해소를 통한 갈등 을 없애고 직무에 대한 균형적인 조정으로 안정화 추구

### *8. 학교와 체육회 협업 으로 체육인재 양성 기반 구축 미진*

- ✓ 학령 인구 절벽과 온라인 게임 발달로 스포츠 인재 양성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 상황 인식 필요
- ✓ 연령과 스포츠 기능 수준에 따라 체험마당, 입문마당, 매니아 마당, 선수마당으로 위계화 추구
- ✓ 학교와 지역클럽 간 협업체계 구축 - 학교는 시설지원(필요시)과 학사지원, 지역은 선수육성으로 역할 분담
- ✓ 체육특성화 학교 전국적으로 확대

### *9. 시군, 시도별 학생스포츠대회 신설 - 교육적 효과와 학생 선수 발굴육성*

- ✓ 선진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학생 스포츠 축제는 지역축제로 승화함을 모형삼아 학생스포츠축전 기획 실행
- ✓ 학생 스포츠 축제는 전문선수층과 매니아층으로 분류하여 학생 만족도 극대화
- ✓ 개인의 자존감, 학교의 애교심 함양, 사회적 협동심 고취, 민주시민 양성, 월드스타 발굴 등의 기대효과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Ⅱ 지방체육회 행정운영 현황 및 문제점

## 1 지방체육회 현황 및 문제점(3)

### 10.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으로 체육인 단합과 시민 스포츠 위상 강화 필요성

- ✓ 체육회-공공클럽-민간스포츠시설업-개인건강운동참여자-개별적여가스포츠클럽 -시설공단 운동참여자 등 다양한 체육구조를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 구조로 묶어 상생하는 형태로 구축
- ✓ 시민이 체육회를 신뢰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이 인구의 10%이상 가입하도록 하며 첨단의 운영관리시스템을 구현하여 위상 강화
- ✓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계승하여 스포츠 본연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체육회를 만들어 시민스포츠 실현의 중심체로서의 역할 수행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3 동계 학술세미나

# 지방체육회 사업구조 분석과 성공적 운영방안

## Ⅲ 지방체육회 문제점 분석및 개선(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Ⅲ 지방체육회 문제점 분석및 개선(안)

### 1 지방체육회 개선안(1)

| 지방체육회 현황 및 문제점 | 개선 (안) |
| --- | --- |
| 지방체육회 독립성, 자율성 실질적 확보 어려움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활성화로 원활한 정책 협의 추진 |
| 선출직 민선 회장 위상 및 역할 불분명 | 회장 선출제도 대폭적 개선으로 위상 정립 |
| 답보적 운영으로 외면받은 체육회 행정 | 시민 중심 체육으로 미래 비전 제시 |
| 학교체육 심각한 침체 현상 | 수준별 육성 시스템 구축으로 동아리 클럽및 전문선수 발굴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Ⅲ 지방체육회 문제점 분석및 개선(안)

### 1 지방체육회 개선안(2)

| 지방체육회 현황 및 문제점 | 개선(안) |
| --- | --- |
|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취약 | 수준별 참여 형태의 종목별 프로그램 개발 |
| 공공-민간 체육 섹터간 이해도 및 협력 부족 | 상호간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전략 필요 |
| 우수 지도자 처우개선 및 직업 안정성 부족 | 클럽 활성화, 마켓팅 전략 수립으로 직업 안정성 확보 |
| 종목간 균형 발전 저해로 경쟁력 상실 및 위화감 조성 | 체육회, 종목별 클럽 확장을 위한 자체 부양책 마련 |

## Ⅲ 지방체육회 문제점 분석및 개선(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1 지방체육회 개선안(3)

| 지방체육회 현황및 문제점 | 개선 (안) |
| --- | --- |
| 턱없이 부족한 스포츠 시설 | 기업 투자 확보 및 공공 자원 투입 예산 상향 조정 등 |
| 융합적 사고 미진 | 스포츠마케팅, 시민스포츠 확대를 위한 첨단산업 기술 접목 |

2023 동계 학술세미나

# 지방체육회 사업구조 분석과 성공적 운영방안

## Ⅳ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Ⅳ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

## 1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1)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

| | | |
|---|---|---|
| 1 | 급변하는 국가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변신 | - 전문체육 중심의 국가체육에서 스포츠 참여 영역 확장에 따른 구조 변화<br>- 생애주기별 체육 시스템 확대 발전으로 생활체육-전문체육의 균형적 조화 추구<br>- 학습권과 운동권이 균형을 이루며 선수- 지도자의 인권과 윤리가 보장되는 스포츠 환경 조성 |
| 2 | 지도자 직업 안정성 및 진로 영역 확장과 민간 스포츠 영세성 탈피 必 | - 스포츠지도자의 직업 안정성 및 윤리성 확보 노력, 연령별, 종목별, 수준별 특화된 지도자 영역 확보<br>- 민간 스포츠 사업자에게 교육사업으로의 사업 영역 인정으로 세제 혜택 부여 |
| 3 | 지방체육 예산 확대 (지방비 2%→3%) | -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 확립 위해 지자체 노력<br>- 시민 모두가 스포츠로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스포츠 시스템 구축<br>- 시민 스포츠 플랫폼 구현을 통한 지역 특성화 사업 전개<br>- 이를 위한 지방체육 예산 확보 안정성 확보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Ⅳ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

## 2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2)

**지방체육회 정책 발전 구도**

| | | |
|---|---|---|
| 4 | 법률 개정및 실질적 실행 |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실질적 수행 - 대한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br>- 스포츠교육사업을 하는 민간스포츠사업자 부가세 면세 혜택 추진<br>- 실업팀 창단 확대를 위한 창단기업 면세 세제혜택 부여<br>-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체계 - 체육회 중심의 단일 종목 운영시설 확보 조례 명시 |
| 5 | 다양한 시설 확충 방안 필요 | - 기업의 사회기여 사업 투자를 스포츠 인프라 확충 투자에 최우선적 배정 요망<br>- 지자체 체육시설 확충및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 정률 배정 상설화<br>- 스포츠 기반 조성의 3대 요소 :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으로 안정적 기반 조성 |
| 6 | 공무원 체육직 신설 및 지자체-체육회 간 소통 협업체계 강화 | - 전국 17개시도, 228개 시군구에 체육담당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으나 전문성 결여<br>- 시민스포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 대부분 부정적 평가가 많음<br>- 지자체와 체육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성있는 직렬제 공무원 확보 요망 |

## Ⅳ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3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3)

**지방체육회 정책 발전 구도**

| | | |
|---|---|---|
| 7 |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 안정적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지원<br>- 시군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 간 상호 장점을 활용하는 협업체계 구축으로 갈등 요소 해소 |
| 8 | 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용 必 | - 스포츠 3법(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복지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를 위해 법령에 명시된 체육진흥협의회(시장,체육회장, 교육장, 민간위원)의 실질적 운용 必<br>- 지자체의 체육정책에 관한 결정 협의체로 매우 중요한 기구임. |
| 9 | 지자체-체육회 주도로 민간기업 실업팀 창단 권장 | - 기업 유형에 걸맞는 종목으로의 실업팀 창단 유도<br>- 선수들의 평생직장으로 고용안정과 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 극대화<br>-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창단팀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 Ⅳ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4 지방체육회 선진화 방안(4)

**지방체육회 정책 발전 구도**

| | | |
|---|---|---|
| 10 | 인구 10% 목표 회원 가입 운동 전개 | - 체육회는 종목별 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폭넓은 교육 서비스 제공<br>- 대회 운영 요원, 심판요원의 자격 교육 서비스로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br>- 회원 가입 앱을 개발하여 시민의 참여 수월성을 확보하여 클럽 회원 증대에 메진<br>-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시민 스포츠 확대 사업에 주력하여 지역내 위상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3 동계 학술세미나

## V 종합 정리 및 제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V 지방체육회 종합정리 및 제언

① 생애주기별 다양한 시민리그 사업 전개,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실행으로 재정안정성 확보.

첨단 산업기술 접목으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역별 특화사업 개발 추진,

② 채육회의 지방체육회 존재 이유 인식 제고

- 정치를 벗어나 스포츠 여가, 문화, 건강 및 복지를 아우르는 시민 사업 전개로 시민 공감 중심체로 자리매김 구현

③ 건강한 시민 행복을 위한 체육회 책임성 확보 – 시민의 건강, 복지, 공동체 문화 창달의 중심축 역할

④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실질적 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 확보

⑤ 체육회, 종목단체, 공공 스포츠와 민간 스포츠 사업자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생 발전 모색
- 시급한 법률정비

⑥ 체계적인 유 · 청소년 스포츠 보급, 육성 시스템 구축
: 체험과정-입문과정-매니아과정-선수과정의 클럽화

지방체육회 구조 분석과 성공적 운영방안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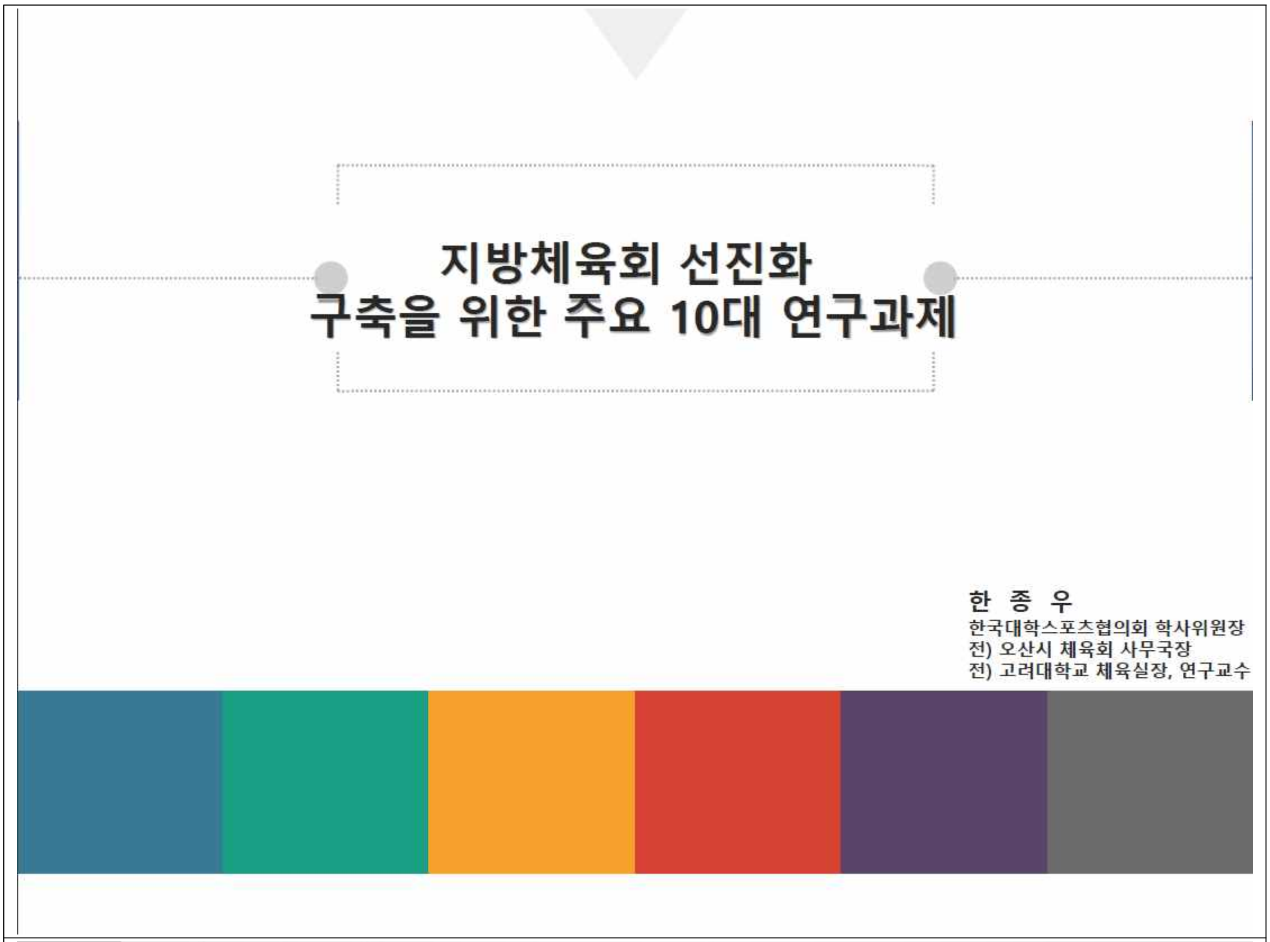
지방체육회 선진화
구축을 위한 주요 10대 연구과제
한 종 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학사위원장
전) 오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전) 고려대학교 체육실장, 연구교수

Contents
I
지방체육회 정책 선진화 방안
II
지방체육회 행정 선전화 방안
III
시민스포츠 계층별 선진화 방안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3

## 지방체육회 정책 선진화 방안

**01**

Political initiative Sport를 Sport intiative Sport 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체육회 체육정책 수립

- 체육회 기능을 종목단체 중심에서 시민스포츠 중심으로 전환하여 운영 확장성
- 인구 10% 회원 가입 운동 전개로 체육회 강력한 구축 맨파워 구축
- 절대 부족한 종목단체 행정인력 보강을 위해 자원봉사 활용 방안 연구 (심판 요원, 진행요원 포함)
- 견고한 지역 체육 진흥협의회 운영체계로 협치 구조 완성

4

## 지방체육회 정책 선진화 방안

**02**

**지방 체육회 재정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법정 법인화된 지방체육회 예산을 정률 배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필요
- 국비 (기금포함) 지방비, 회비 후원금, 협찬금, 수익금 등 재원 마련 다변화 추진
- 지방 재정 교부금법의 개정 – 지방 체육회 사업 수익을 체육진흥을 위해 선순환하여 활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 요청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정례화하여 명실상부한 정책 및 예산 결정의 안정화 추구

5

## 지방체육회 정책 선진화 방안

**03**

공무원 체육직 직렬제와 개방직 시행으로 소통 협업체계 강화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모든 지자체가 체육부서를 배치하고 있음, 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체육단체와 갈등의 소지가 다분함
- 따라서 체육분야를 직렬제로 채용하거나 개방직을 의무화 하여 소통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스포츠 발전토록 추진

6

## Ⅱ 지방체육회 행정 선진화 방안

### 04

지방체육회 독립성,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 현행 확대대의원으로 실시하는 선거는 효용성, 파급성, 홍보성이 전혀 없는 제도
- 시민이나 체육인들에게 전혀 부각되지 못하므로 회장 위상이 추락하는 부작용
- 회장의 자질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함. 관선제 수석부회장보다 못한 평가
- 등록회원 전원 투표제, 추대제, 지자체장 런닝메이트제 등 다각적인 검토로 개선

7

## Ⅱ 지방체육회 행정 선진화 방안

### 05

시군체육회와 공공스포츠 클럽과의 상호 보완적 발전 구도에 관한 연구

- 지역내 체육조직과 공공스포츠 클럽과 갈등요인이 증폭되는 상황
- 체육회와 클럽의 장점을 살려 상생 발전하는 구조로 전환 필요성이 시급함
- 스포츠클럽법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함
- 문체부, 대한체육회가 앞장서 안정적 거버넌스 구조 체계 구축 하도록 지원 절실

8

## Ⅱ 지방체육회 행정 선진화 방안

**06**

시군체육회와 직원과 지도자간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 연구

- 시군마다 지도자의 활용성에 대한 평가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시군 체육회가 시민스포츠 발전적 구도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불평등으로 행정지원에 대한 갈등
- 공공스포츠클럽과 지도자 교류에 대한 검토

9

## Ⅱ 지방체육회 행정 선진화 방안

**07**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자율적 행정 영역 확보에 관한 연구

- 중앙, 시도, 시군구 체육회의 행정 업무가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과 갈등 소지가 있음에도 일방적 지시 전달로 불만과 갈등이 팽배함.
- 행정업무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공통 사업과 자율 사업을 분류하여 창의적 사업 전개를 장려함으로써 차별화된 체육회로 변모하도록 유도

10

## Ⅲ 시민 스포츠 계층별 선진화 방안

**08**

다양한 체육조직들과의 상생 발전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체육회, 시설공단, 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민간시설업(교습업), 민간 유소년 클럽, 비경쟁성 종목 동호인클럽 들과의 시민체육 발전 협의체 구성 및 지원
- 시민스포츠 확장성과 스포츠 회원 확보를 통한 맨파워 강화 및 정보력 확대
- 공공과 민간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범 체육인 결속력 확보

11

## Ⅲ 시민 스포츠 계층별 선진화 방안

**09**

학교와 지역사회 유,청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을 위한 보급, 육성의 혁신적 정책 방안 연구
- 일반학생의 스포츠 매니아층 적극 지원 및 학생선수의 운동권, 학습권 확보 지원
- 지역사회 전문선수 클럽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 체험단계 – 입문단계 – 매니아단계 – 선수단계로 진화하는 육성 구조화 구축

12

## Ⅲ 시민 스포츠 계층별 선진화 방안

**10**

지역 기업 특성에 부합한 실업팀 창단 적극 유도

- 정규직 개념의 기업 실업팀 창단 (저비용, 고효율 측면의 운동부 구조)
- 유,청소년 선수 입문자들에게 미래 직원 진로에 대한 희망적 비전 제시
- 기업 특성에 맞춘 종목을 선택하여 홍보 마케팅 진작과 매출 증대와 연동
- 선수는 일하면서 운동함으로써 직장 동료들이 호응하는 구조로 전환

13

「토　론 2」

# 지자체 입장에서 바라본 성공적인 민선 지방체육회의 조건

위원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자문관

# 지자체 입장에서 바라본 성공적인 민선 지방체육회의 조건

위원석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자문관

## 1. 들어가는 말

이것은 논문이 아니다. 민선 1기 지방체육회에 대한 하나의 관찰기이다. 나는 27년 동안 체육기자로 일했다. 따라서 관찰자의 시점에 익숙하다. 이 글은 지방체육회가 민선 체제로 이양되는 과도기에 한때는 체육기자로, 또 다른 한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어공'으로 일했던 내가 안팎의 상황을 두루두루 '관찰'하면서 얻은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다. 특히 이 글의 어떠한 내용도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1960년대 중반 서울에서 태어난 나는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초등학교 6년을 모두 보냈다. 내 어린 시절의 스포츠 영웅은 대략 김일, 홍수환 같은 이였다. 고등학교 1학년때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대학 시절에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어쩌다 '스포츠서울'이라는 한때 가장 잘나가던 스포츠전문지에 수습기자로 입사해 27년을 그곳에서 일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체육계의 큰 흐름은 대충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방체육회나 지방체육행정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 전혀 몰랐다. 체육기자들은 보통 스포츠 현장에 몰두한다. 독자가, 팬이 관심있는 것과 곳을 파게 된다. 그것은 대략 프로스포츠에 해당되며, 또는 올림픽같은 큰 국제대회가 되기 마련이다. 체육행정이란 대부분의 체육기자들에게 관심밖이다. 각 사마다 문체부, 대한체육회의 출입기자들이 있지만 그나마 열성을 갖고 이쪽 분야를 파는 이는 아주 적다. 문체부나 대한체육회가 이런 실정이니 지방체육행정에 관심을 갖는 이는 천연기념물에 가깝다.

나는 27년동안 체육기자를 하면서 지방체육회나 지방체육행정에 관련된 글을 써본 일이 단 한번도 없다. 아마도 많은 체육기자들이 그럴 것이다. 그만큼 지방체육행정은 관심과 감시, 비판의 사각지대다. 언론에게도 그렇지만, 일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지방체육회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 아마도 오랜

기간 지자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했다는 사실도 일반인들을 잘 몰랐을 거다. 자연스럽게 지방체육회는 그들만의 리그였고, 관행의 세계였다.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고민할 이유도 없었다. 그저 이전에 하던대로 하면 됐다. '회장님'이 '시장님'이니 예산도 절로 따라왔다. 지방체육행정이라는 '섬'에서 편하게 지내기 딱 좋았다.

## 2. 체육이 정치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했다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기자 말년에 지방체육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벌어졌다. 무풍지대였던 지방체육계에 초특급 태풍이 분 것이다. 지방체육회 설립 이후 초유의 사태였다. 2019년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43조의 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단 한 줄은 개정안 처리 전후로 체육계에 엄청난 논란과 파문을 불러왔다.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논란이 가열될 때, 나는 편집국의 총책임자로 있었다. 2019년 5월 7일 국회에서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내가 일하던 신문은 한 면을 털어서 토론회 내용을 지상중계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안민석 의원(당시 문체위 위원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라고 농반진반같은 화두를 던졌다. 이 개정안에 대한 지방체육계의 민심이 험악하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안 의원과 같이 개정안을 주도했던 이동섭 의원은 한술 더 떴다. 자신을 "혁명을 한 사람"에 비유하면서 "75년간의 관치, 체육적폐를 한방에 날려보냈다. 혁명에 가까운 일이다. 지자체장이 (자신의 권한을 자의로)내놓으려고 했겠느냐. 체육인들은 그동안 (지자체장의)종살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법을 통해서 지방 정치권력에서 체육인들을 해방시켜줬다는 뉘앙스였다.

해방이 됐으니 기뻐해야 마땅한데, 도무지 당시 지방체육회 관계자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투성이였다. 정치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왜 걱정을 하고, 반대를 했을까. 말뿐인, 허울뿐인 해방이요 독립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체육계와 지방체육회는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다. '스포츠경향'의 김세훈 기자는 개정안 통과전인 2018년 11월 15일자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취지는 좋지만…'이라는 이름의 컬럼에서 체육계의 걱정을 이렇게 전했다.

**'지방체육단체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0% 이상 지자체 예산입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도 지자체 소유입니다. 체육단체장이 지자체장이 선호하는 사람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싫어하는, 정치노선이 반대인 인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체육단체가 지금처럼 지자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체육단체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입니다. 여러가지 보완규정이 없이 겸직금지 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체육단체가 존재감이 약해지면서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체육계의 이런저런 근심 걱정은 계속 됐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원하지 않은 해방'이 위에서부터 강제로 주어진 모양새였다. 개정안 통과 1년 뒤인 2020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민선 1기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완료되고 민선 회장(17시도, 228시군구)이 탄생했다.

선거 이후 지방체육회장은 똘똘 뭉쳐서 국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또다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운동에 나선다.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법정법인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관련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또 깨닫는다. 법정법인화가 됐다고 무조건 운영비가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또다시** 정치권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운동에 나선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도 관련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또 깨닫는다.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가 되어도 상세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로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구나. 그래서 **또다시** 정치권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운동에 나선다. 조례 대신 대통령령으로 일률적 지원 비율을 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체육회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3단계 개정 완료+4단계 추진중>
1단계 지자체장의 겸직 금지(2019년 1월 15일 개정)
2단계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2021년 6월 9일 개정)
3단계 운영비 지원 의무화(2022년 2월 3일 개정)
4단계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일괄 해결(추진중)

이 지난한 과정을 한마디도 정리하면 돈(예산)을 달라는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민선 체제는 예산 확보의 불안감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니 제도적, 법적으로 그런 불안 요소를 제거하자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민선1기 지방체육회장의 일차적 목표는 단순했고, 타당성을 가졌으며 그만큼 절실하기도 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통해 소기의 성과(2,3단계 개정)를 거두기도 했다. 훗날 민선1기 체육회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과도기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점이 첫 손에 오를 것이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돈을 달라는 노력 외에 민선1기 지방체육회가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는, 즉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시도는 별로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다. 이전과 같이 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을 반복하기 위한 돈도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름지기 민선체제라면 '앙시앙 레짐(구체제)'와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거기에 따른 돈을 지자체와 의회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돈을 확보하려는 노력 외에 민선체육회로서의 비전 제시에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나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민선체제의 지방체육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 3. 사례 1: 서울시체육회의 경우

서울시체육회는 민선1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다. 17개 광역지자체 체육회 가운데 오직 서울시체육회만이 가장 체계적이고, 야심찬, 그리고 민선 체제에 걸맞는 문제의식으로 무장한 공약과 실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이 계획이 실천됐다면, 실천까지는 아니어도 시도를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경험이라도 축적할 수 있었다면 지방체육행정에 크나큰 유의미한 축적물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신기루같은 상상의 프로젝트로 끝났을 뿐이다.

서울시체육회 박원하 회장은 당선 이후 자신의 공약을 체계화하고 실천 로드맵을 밝힌 140쪽의 책자 '민선1기 서울특시체육회장 공약이행 추진계획 보고서: 사람 중심, 기반 튼튼, 시민 행복'을 발간했다. 이 책은 서울시체육회 선거 공약의 체육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체육회장의 민선은 한국 체육역사에서 중요한 의미이다. 박원하 회장은 최초의 민선 회장으로서 기존의 한국 체육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 스포츠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맡게 되었다. 공약은 이러한 시대적 필연성과 사회적 요구를 충실하게 수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체육단체는 국가주도의 체육정책과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체계는 예산,인사,조직구성과 운영 등 거의 전방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 간섭을 받아왔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으로 한국 체육의 기반이 구성되고 지탱되었으며 그 형태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지금까지 50년 이상 한국의 체육시스템으로 작동해 왔다. 민선 체육회장의 선출은 기존 체제의 평가와 새로운 체제의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이어 총 16개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세부과제 이행과 추진전략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16개의 공약을 모두 훑어보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다만 이 공약이 민선체제는 '구 체제'와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문제 의식 속에 도출됐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체육회는 스스로 체육회와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 별도로 '서울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담대한 시도였다. 또한 <공약10> '서울시 공유스포츠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공약11> '서울시민 스포츠참여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스포츠 마일리지 제도)과 민주당(스포츠포인트 제도)의 주요 체육관련 공약으로 변형돼 등장했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선1기 서울시체육회의 야심찬 기획과 도전은, 불행히도 3선 지자체장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당초 이 공약과 로드맵은 박원순 시장과 그의 정무라인에게 암묵적인 동의를 받고 구성된 것이었다. 이 담대한 계획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방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이 로드맵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금단의 것'이 되어버렸다. "서울시청내의 내부 동력이 없어지면서 공약 로드맵은 같이 좌초됐다. 기존의 시청 관료들에게는 이 공약은 별로 이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을 뿐"(공약에 참여했던 인사의 회고)이었다.

서울시체육회의 사례는 체육계의 구조개편이나 개혁같은 빅 이슈는 '탑다운'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지자체장의 권한과 체육회의 실행력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 4. 사례 2: 인천시체육회의 경우

인천시체육회는 3년의 시차를 두고 민선1기와 민선2기 선거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두명의 플레이어가 보기 드문 상황을 보여줬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 강인덕과 이규생. 강씨는 국힘당 계열 시장 아래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지냈고, 이씨는 민주당 계열 시장 밑에서 체육회 사무처장을 한 경험

이 있다. 둘 다 지역 체육계에 잔뼈가 굵은 강자였고 지역 정계와의 관계도 탄탄했다.

2020년 1월 8일 민선 1기 선거에서 강인덕 후보는 단 6표 차이로 이규생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제압하고 당선됐다. 민주당 시장 아래서 국힘 계열 체육회장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인덕 후보의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고, 3월 벌어진 재선거에서 이규생 후보가 당선됐다. 2기 선거에서는 현 이규생 회장에게 다시 강인덕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그사이 바뀐 것은 지방권력.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3년전과 정반대의 정치 환경에서 이들의 리턴 매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2기 선거에서 이규생 후보는 45%를 얻어 31%를 얻은 강인덕 후보에게 완승을 거뒀다. 국힘 지지성향이 있는 제3의 후보가 24%를 가져가면서 표가 분산된 것이 승부를 갈랐다는 평이었다.

선거 이후 지역의 관심을 '국힘 출신 시장과 민주당 성향 체육회장'의 협조와 공조가 가능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유력 지역지 인천일보는 2022년 12월 26일자부터 3회에 걸쳐서 '체육회 지상과제: 예산독립' 이라는 특집 시리즈를 실었다. 이 기사는 민선 2기의 임기가 시작되는 2023년 인천시체육회 본예산이 전년 대비 5.27% 증가했다고 밝히면서도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안심은 이르다. 시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이 시의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2~3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도 본예산은 사실상 '체육회장이 누가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민선2기 첫 해인 2023년 여름 1차 추경부터 시작해 2024년도 본예산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규모로 정해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체육회장-인천시-인천시의회가 서로 정치적인 결이 다름에도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처럼 예산이 무기로 쓰여지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할 것'이라는 체육인들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앞으로 인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다. 지자체장의 겸직 금지로  체육이 정치에서 독립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의견이다. 정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 분야는 존재할 수 없다. 정치의 원래 기능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정치와의 관계에 따라 체육에 돌아오는 자원의 양과 순서가 정해진다. 인천시는 향후 민선2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가 될 듯하다. 협치의 진수를 보여줄지, 익숙한 데자뷔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 5. 사례 3: 충남도체육회와 강원도체육회의 경우

잠시 수도권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본다. 이번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히트 상품'을 낸 경우다. 현장 밀착형의 미시적인 세부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충청남도체육회의 도민 걷기 프로젝트인 '걷쥬 앱'이다. 코로나19라는, 민선 1기를 강타한 공통된 불리한 조건을 혁파한 사례다.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조건도 발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역이용할 수 있다는 방증으로 꼽을만 하다. 체육회의 정책 제안→도청의 검토후 예산 지원→체육회의 실무 집행이라는 선순환 구조도 모범적이다.

2020년 충남체육회가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모바일 앱인 '걷쥬 앱'은 실행 첫 해 3만5천명 가입한 이후 2022년 중반기까지 회원수 27만명을 돌파했다. 지자체장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적극 실행을 독려했고, 활발한 홍보 활동 덕에 도민 사이에 붐이 일어났다. 주민(유권자)의 반응이 워낙 좋으니 도의회에서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편성으로 힘을 보탰다. 도 관계자는 "이렇게 추경을 받기 쉬운 사업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 문체위에서도 '경기도형 걷쥬앱'을 만들자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강원체육회는 국내 체육계의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주목받았다.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권장하는 시대적 흐름속에 강원도체육회는 소속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의 노동권을 크게 강화하는 고용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 실시로 2021년 2월 대한체육회 체육상에서 '스포츠가치 인권혁신' 우수상을 받았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근무시간, 휴식시간, 유급휴일, 훈련수당 등을 명확히 하고 급식비를 신설하는 등 각종 규정을 구체적으로 손봤다. 자연스럽게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늘어나게 됐지만 체육회는 도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했다.
체육회 운영비 관련 조례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 강원도는 2022년 3월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맞춰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고쳤고, 이어 구체적인 예산 액수도 '전전년도 도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이내로 한다'고 명시했다. 강원도 예산의 최대 2%가 체육회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됐다는 의미다. 지자체 체육진흥조례에서 예산 규모를 특정한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었다.

충남과 강원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빠르게, 바르게 추진하면 얼마든지 '작지만 강한' 지방체육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있는 사례를 보여줬다.

## 6. 사례 4: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자, 이제 돌아돌아 경기도에 왔다. 경기도체육회는 민선 1기에서 늘 논란의 중심이었다. 체육계는 '경기도체육회 사태'를 '대표적인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정치 관여 사례'(심상보 부장 발제문의 표현)로 판단한다. 반면 당시 경기도 집행부나 도의회는 지방체육회를 일정 정도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고 상황에 따라 지방체육행정의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치 '라쇼몽(羅生門)'처럼 보는 각도와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셈이다.

'경기도체육회 사태'가 불붙기 시작했을 때 내 직업은 체육기자에서 경기도 체육정책자문관으로 변해 있었다. 오랜 기간 체육기자로 살아왔던 관성대로, 나는 이 사태를 관찰자같은 시각에서 분석하고 바라보았다. 당시 내가 지역지에 기고했던 칼럼이 있다. 새로 시작하는 민선 체제에서는 두 참가자(지자체 소속 체육정책 담당자와 지방체육회)가 모두 변해야 한다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었다. 2021년 3월 25일자 경인일보 컬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남상우 충남대 교수의 논문 '스포츠 거버넌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면 거버넌스 모형은 대략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머릿속에 세로축과 가로축을 쓱 그려보자. 네 개의 공간이 나올거다. 세로축은 권한의 집중도를 뜻한다. 가로축은 안정이냐, 변화냐를 보여준다. 권한이 집중되면서**

**별로 변화하지 않는 공간을 위계적(hierarchy) 모델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스포츠 거버넌스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고 있었다. 이 모델의 대각선 지점인, 권한을 분산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공간을 열린 체계(open systems) 모델이라고 한다. 반면 권한은 집중돼 있으면서도 변화를 시도하는 공간도 있다. 이를 합리적 목표(rational goal) 모델이라 부른다. 남 교수는 이 모델을 "많은 국가들이 스포츠 거버넌스와 관련해 채택하는 모델이며 짧은 시간내에 최대의 효과, 특히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권한은 분산됐지만 안정을 추구하는 자치(self-governance) 모델도 있다. 국내 17개 시·도 체육회가 민선 회장 선출과 법인화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영역과 민간단체인 경기도체육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새로운 체육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권한은 집중된 가운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위의 네 가지 거버넌스 모형 가운데 합리적 목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체육 거버넌스가 위계적 모델에 머문다면 많은 참여자들이 편할 수 있다. 과거에 하던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행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모두 변해야 한다.**

지방체육회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위계적 모델'에 머물던 때와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게, 내 문제의식이었다. 주요 플레이어인 관(지자체)과 민(체육회)이 함께 변하면 금상첨화였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경기도체육회 사태'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경기도는 체육회에 위탁했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고 했다. 8개 항목의 사업이었다. 법정법인화가 이뤄진 이후 5개 사업은 다시 체육회에 위탁을 맡겼다. 이 와중에 체육회에 위탁했던 업무를 맡길 체육진흥센터(재단) 설립을 위한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센터 설립 구상은 끝내 무산됐다.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업무 이관 방식은 내부 법률 자문, 중앙행정기관 질의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 간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기능적 역할 분담이란 도가 주요 시책 마련,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도체육회는 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현장운영, 예산 집행 등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경기도체육회 사태' 당시의 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선 1기 이원성 회장은 지난해 말 민선 2기 선거에서 '정치로부터의 독립', '체육인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식의 캠페인을 펼친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인단의 표심은 '경기도체육회 사태'에 대하여 체육회 쪽의 편을 다시 들어준 셈이다. 한때 국내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기도체육회 사태'는 무엇을 남겼을까. 대다수 체육계 인사는 체육회의 자율성을 해친 지방 정치권력의 나쁜 사례로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여전히 의문이다.

## 7.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못지 않은 체육 행정의 중심이다. 아니 오히려 풀뿌리 체육(학생+전문+생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한체육회보다 더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체육회 심상보 부장의 발제문 '지방체육회 민선 1기의 명암과 성공적인 민선 2기를 위한 현실적 제언'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발제자는 민선1기 지방체육회가 민선화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

련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지방체육의 정치화가 되려 심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여기에 지방체육의 정치화에 대한 개인적인 촌평을 더해본다. '구체제'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인 출신 지자체장이 '체육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문제가 컸다면 '민선체제'에서는 정치 지망생(정치지향 지역 토호나 유지=즉 잠재적 지역 정치권 희망자 또는 대기자)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 체육을 이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현상이 고착화되면 지방체육회의 중심이 자꾸 이들로 이동하면서 정작 체육인들은 지방체육행정에서 소외될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발제자는 또 '성공적인 민선 2기 지방체육회의 과제'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론을 제기하기 힘든 정석과 같은 제안이다. 하나 하나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한다. 상당 부분 필자의 생각과 고민의 지점과 맞닿는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는 민선 체육회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적시하면서 발제자에게도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발제자의 말처럼 지방체육회장의 전문성이 중요하고 체육회 인력의 맨파워를 키우는게 급선무이다. 그런 점에서 좋은 지방체육회의 리더를 뽑기 위해서 지방체육회장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 민선2기 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는 등 1기 선거때 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정책토론회가 사실상 열릴 수 없는 규정(후보자 중 한명이라도 토론을 거부하면 토론회 개최 불가. 17개 광역 선거중 정책토론회는 오직 인천에서만 열렸음)은 시급히 손봐야 한다. 젊은 체육인들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지방체육회장 선거 규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궁금하다.

둘째, 지방체육은 숙명적으로 정치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발제자의 과제 3번). 그러면서 지방체육의 정치화(또는 지방 토호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체육을 이용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일견 모순되 보이는 숙제다. 하지만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는 난제이기도 하다. 전자는 '한정된 자원의 분배 우선 순위를 정하는 순기능으로서의 정치' 영역을 뜻한다. 체육이 보다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면 '정치'를 설득해야만 한다. 체육이 정치와의 순관계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반면 후자는 체육을 이용해 특정인의 정치적 이득을 관철시키려는 경우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전자와 후자의 정치 영역을 무자르듯 구별하기는 힘든 경우가 생겨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이후 일정 기간 체육단체장 금지'라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 검토는 어떤 함의와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협치 기구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2020년 12월 8일 개정) 제5조에 따르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이곳에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회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유하자면 대통령과 대한체육회장이 같이 들어가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이미 마련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실효적인 거버넌스로 가동하고 있는 실예를 과문한 탓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한체육회는 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협의회의 '적극적 활용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몇가지 질문 외에 지방체육회가 앞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대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사족처럼 덧붙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지방체육회의 자기 롤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갖자.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우군을 확보하자. 그 답은 결국 시민(도민)에게 있을 것이다.
–'구체제'에서는 17개 지방체육회가 하는 일이 사실상 똑같았다. 별다른 고민이 필요없었다. 이제는 지역특화된 지방체육회가 나와야 한다. A 지방체육회와 B 지방체육회가 내거는 주요 정책, 운영 시스템이 (지역특화로 인해)서로 달랐으면 좋겠다.
–일반 사회의 흐름을 선도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눈높이는 맞춰야 겠다. 실무 능력(예를 들어 회계 처리 능력)이나 인권 감수성 등에서 뒤처지지 말자. 중장기적으로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단체를 목표로 하자. 다른 분야, 다른 단체와의 협업(퓨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대한민국 17개 광역지자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지자체 체육회의 건투를 빕니다!

「토  론 3」

# 지역 체육 현장에서 경험한 지방체육회 민선 시대

김세명

충청북도체육회 정책개발부 부장

# 지역 체육 현장에서 경험한 지방체육회 민선 시대

김세명

충청북도체육회 정책개발부 부장

## Ⅰ. 서론

지방체육회의 역사를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 근거로 알아보았다. 먼저 지방체육회는 우리나라 역사와 같이 하면서 실제적인 활동으로 보면 광복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관선체제로 시작하였다. 이때의 지방체육회의 재정 지원근거는 1962년에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지방체육회는 지역의 체육회 지위보다는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에 지원근거를 두었다 할 수 있다.

2000년 전후로 충북체육회의 경우 인건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정액지원단체)으로 지원이 되었다. 이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체육단체가 통합이 되었고, 대한체육회의 충청북도지부에서 지회로 바뀌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었던 지방체육회도 이 무렵 선거권이 부여가 되었다. 또한 2016년 통합 전후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부재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의 경우 충청북도체육진흥조례를 통해 도체육회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후 2020년에 관선체제에서 민선체육회장으로 탈바꿈하였으며, 2021년 국민체육지진흥법 개정으로 법정법인이 되었다. 이때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제2항 신설은 지방체육회의 국가 및 지방비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었으며, 2022년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해 지방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필요한 경우 조례에 위임)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 충북체육진흥조례도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해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운영비 지원 의무화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의 전제 조건은 '예산의 범위내' 라는 단서 조항으로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지방체육회는 광복 이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국내 체육발전을 위한 견해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민선체제로의 전환도 지자체장의 탈정치화 명분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의 선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오히려 지자체장에게 더욱 정치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림 1>은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을 근거를 충청북도체육회를 예시로 변

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법적지위는 크게 임의단체-법정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근거의 구분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운영비 보조의무화 전·후와 지역별 조례 제·개정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 < 법적 지위 > | < 재정 지원 근거 > |
| --- | --- |
| 임의단체(충북: 1946년 3월 15일 창립)<br>○ 대한체육회 충청북도 지부<br>○ 도지사 당연직 회장 | 국민체육진흥법제8조<br>○ 지방체육진흥: 지자체 체육단체 체육행사를 적극 원조 (1962. 9. 17))<br>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2항(현재)<br>○ 경비, 운영비 일부 지원 (1962. 9. 17)<br>○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단체 |
| 임의단체<br>○ **충청북도생활체육회와 단체 통합(2016년)**<br>○ 대한체육회 충청북도 지회<br>○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른 **민선체육회장 시대 개막(2020년)** | ○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폐지 (2004년 행정자치부 지침)<br>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신설<br>○ 운영비 지방비 보조 근거 마련: 예산의 범위 내'보조할 수 있다' (2016년 2월 3일)<br>충청북도체육진흥조례 제정<br>○ 사업주체: 도지사<br>○ 재정지원: 도체육회 지원 가능(2017년 2월 14일) |
| 법정법인(2021년 6월 9일)<br>○ **법률상 대한체육회와 동등한 별도 법인**<br>↓<br>○ 충청북도 승인, 충청북도 관리 · 감독<br>↓<br>○ 대한체육회 충청북도 지회 유지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 신설<br>○ 국가에서 보조금 직접 지원 가능(2020년 12월 8일)<br>○ 사업주체: 도지사 → 충청북도체육회(고유 사업과 활동 명시)<br>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개정<br>○ 운영비 지방비 지원 의무화: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하여야 한다' (2022년 2월 3일)<br>- 운영비 지원 필요한 경우 조례 위임(2022년 2월 3일)<br>충청북도체육진흥조례 개정<br>○ 보조금 지원 내용 신설(2021년 8월 6일)<br>○ 운영비 지원 의무화(2022년 6월 30일) |

그림 1 충청북도체육회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

그동안 지방체육회 직원으로서 ▲ 체육단체 통합(전문체육 + 생활체육)이 지방체육회 민선체제에 미친 영향 ▲ 민선 1기 지방체육회의 긍정적·부정적 요소 ▲ 민간체제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 민선 1기 실무자 입장 종합 평가 ▲ 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 관계 차원 등에 대해 경험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민선 2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체육회, 지자체, 중앙정부,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계 이해관계자가 집중해야 할 내용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Ⅱ. 본론

지역 체육 현장에서 경험한 민선체육회장 시대는 한마디로 다이나믹하다. 관선체제에서는 사업 추진과 소요되는 재정 등 당연직 회장인 도지사의 체육 정책 성향에 따르고, 도 담당부서의 의견이 우선시 되는 단순한 구조였다면,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는 여전히 재정에 있어서는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관선 체제의 시각에 민선 체제의 시각이 더해졌다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육회장이 각종 대회와 행사에 다수 참석하게 되어 체육회의 사업방식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청취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이야기 일지 몰라도 지방

체육 시책 추진(위에서 아래로)과 함께 도민을 위한 체육 시책(아래에서 위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 □ 체육단체 통합(전문체육 + 생활체육)이 지방체육회 민선체제에 미친 영향

체육단체 통합 이전에는 각각의 영역이 존재했었다. 도지사는 전문체육 회장, 도의장은 생활체육 회장이었던 시기도 있었으며, 이후 법률 개정으로 생활체육회는 지방의원이 겸직을 못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양 체육단체가 통합이 되어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었으며, 통합 이후 지자체장 겸직 금지법 시행으로 민선화로 전환되었다. <그림 2>는 이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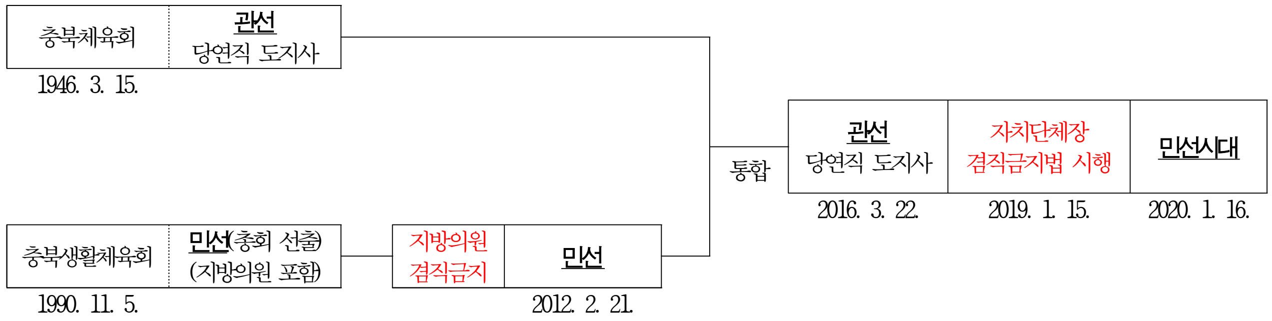


그림 2. 충청북도체육회 체육회장 체제 변화도

체육단체 통합은 민선 회장 체제에서 무엇보다 사업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체육단체 통합시 초대 회장에 도지사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통합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나뉘어진 사업을 이제는 양 단체의 사업추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명감을 주었다. 즉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연계사업, 유아,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건강 프로그램의 육성 과제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 단체의 통합이 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물리적인 화합만 이루어졌지 화학적인 통합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사업 발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융합 사업, 노인체육 활성화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체육재정의 통합으로 사업의 재편성에 따른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체육재정의 통합 지원이 바람직할 수 있다.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과제단위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야 하고, 대부분의 공모사업으로 국내 전 지역이 보편화된 사업을 펼치기에도 제한적이다.

민선 체제가 바로 자리를 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제 굵은 뼈대만 세운 것으로 이러한 사업과 재정의 화합적 결합으로 체육 분야에서 이야기 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으로 다가가야 한다. 왜 준비도 하지 않고 민선으로 전환하고 법정법인으로 탈바꿈하였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된 대·외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더 바람직하다.

## □ 민선 1기 지방체육회의 긍정적 측면

첫째,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이전 지방체육회는 법률상 대한체육회의 지부로써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

비 보조금에 재정이 편중되어 지자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실 예로 통합 이전 충청북도체육회의 재정은 99%가 지방비라고 봐야 한다. 대한체육회의 지원은 행정지원금 300만원과 소년체전 출전비가 지원되었으며, 이러한 재정 지원에 대해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를 두지 않았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은 법률상 대한체육회와 동등한 체육단체, 국비 지원 직접지원 가능(사업비 정산의 다중 구조 탈피), 지자체의 관리·감독체제 강화의 명시 등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의 탄력은 체육회장이 민선일 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충북의 경우 외부의 후원금이 증대되었다. 관선체제와 민선체제에서의 기업체 등 외부 후원금을 비교해보면 민선체육회장 기간에 보다 많은 후원금이 외부에서 세입되었다. 관선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는 2019년에는 금융기관 등 총 1억5천2백만원이 세입되었고, 민선체제인 2020년에는 건설업체 등 총 3억4천3백만원, 2021년에는 3억6백만원, 2022년에는 4억1천9백만원으로 2019년 대비 279.3%가 증가되었다.

표 1. 후원금 세입 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 2019년 (관선) | 2020년 (민선) | 2021년 (민선) | 2022년 (민선) | 비고 2019 & 2022 |
|---|---|---|---|---|---|
| 세입액 | 150,000 | 343,000 | 306,000 | 419,000 | 279.3% 증가 |
| 증감 | - | 193,000 | △37,000 | 113,000 | |

셋째, 사업의 다양성 추구이다. 앞서 언급된 부분으로 지방비와 국비의 재정 지원 체계는 유지가 되면서 사업에 대한 시각의 다양화가 더해졌다. 관선시대에는 도정 방침과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른 사업추진이 아무래도 강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선시대 개막으로 도의 체육 시책은 물론 민선 회장의 현장 활동 다변화로 체육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능력이 가미되어 다변화된 사업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 민선 1기 지방체육회의 부정적 측면**

모든 제도화의 변화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첫째, 재정에 있어서 도지사의 체육회장 프리미엄이 없어졌다. 관선시대에는 도지사가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미 있는 체육행사 등에 도지사가 참석해 체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 도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나, 민선체제의 전환은 굵직한 행사는 참여한다고 해도 체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사의 정책 성향에 따라 재정 지원의 순위가 지역의 숙원사업 순위보다 밀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둘째, 체육의 정치적 종속이 현실화 됐다. 지방체육회의 행정적·재정적 자율화는 재정적 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선 재정 지원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지방체육회의 운영비가 의무화가 되었으나, 단서 조항이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운영비 지원의 의무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운영비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범위 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민선체제의 전환이 탈정치화가 우선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지만, 오히려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더욱이 도지사와 도체육회장과 보이지 않는 정치적 색깔이 다를 경우 이는 더더욱 그렇다. 지역사회에서 도지사와 체육회장은 한 순간에 반짝 선출되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지역에서 나름 포지션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노선이 처음부터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체육회장 선거를 도지사와 같이 해 런닝메이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지난 경기도의 체육진흥센터 설립, 사업 및 운영비에 대한 삭감은 17개 시·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 지방체육회 민간체제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가장 시급한 사항이 첫째, 지역별 ‘체육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안정된 재정 지원이 되도록 제도화를 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내 체육진흥센터 건립으로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모두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지방체육회는 엄청난 고난과 터질게 터졌구나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체육진흥센터 건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문체부로 질의한 결과, 문체부의 회신은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의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명시된 12개 지방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은 지방체육회의 고유 사무로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표 2>와 같이 지방교육과 비교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지방교육과 지방체육이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나, 지방교육은 교육청에서, 지방체육은 체육회에서 그 사업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전에는 도지사가 체육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지방체육회의 고유 사업과 활동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의 법률 체제에서도 지방비의 정률 지원은 가능하다. 언론보도를 통해 체육회에 대한 정률 지원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편성권과 심의권의 침해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체육회의 재정 지원은 보조금이 아닌 교부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지방체육은 충청북도의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체육회에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금 시스템이 아닌(해되 되고, 안해도 되고, 다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여부 등), 충청북도의 사무를 도체육회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방식(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강제성)인 교부금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 법률을 기초로 해 가능할 것이다. 법률에 명시된 지방비 지원 의무화 규정과 조례에 위임한 것은 지역별 체육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상위법에서 마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시행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것이다.

표 2. 지방 체육 및 교육 분야 법률 및 조례 비교

| 구 분 | 지방 체육 | 지방 교육 | 비 고 |
|---|---|---|---|
| 사 무 |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br>- 지방자치단체 사무 |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br>- 지방자치단체 사무 | 지자체 고유 사무 |
| 설립 및 사무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제1항<br>- 지방체육회 설립근거<br>- 지방체육회의 고유 사업과 활동 명시<br>○ 국민체육진흥법제43조의2<br>-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체육회장 겸직 금지 → 민선체육회장의 역할 | ○ 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 및 제2항<br>- 별도의 기관을 둠<br>- 다른 법률에 위임<br>○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제18조~20조<br>- 교육 · 학예 사무집행기관 교육감을 둠<br>- 교육감 관장 사무 명시 | 법률 |
| 재정지원 | ○ 국민체육진흥법제8조<br>- 행정구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br>○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2항<br>- 국가와 지자체 경비 · 연구비 일부보조<br>○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br>- 지자체 예산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의무<br>- 필요한 사항 조례에 위임<br>○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제1항제10호<br>-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지원 대상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제1호<br>-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br>○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br>- 도세의(목적세 등 제외) 1천분의 36 | 법률 |
| | -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br>- 관할 구역 교육경비 보조 범위, 신청 | 대통령령 |
| | ○ 지역별 체육진흥조례 부재<br>※ 강원도 전전년도 도세의 2% 이내 | ○ 지역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조례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법 등

표 3.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체육진흥조례 개정 비교

| 구 분 | 강원도체육진흥조례 | 충청북도체육진흥조례 |
|---|---|---|
| 조례 | 제13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본항신설 2022.4.8.]<br>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4.8.><br>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강원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계액은 전전년도 도세(「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세를 말한다)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본항신설 2022.4.8.]<br>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br>2. 사무실 운영경비<br>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제7조(보조금 지원)<br>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21.8.6.]<br>②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br>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br>2. 관서운영 기본경비<br>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br>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2.6.30.><br>④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br>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6.30.> |

지방체육회의 재원은 지방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방체육회에 국비 지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정된 지방비 지원의 제도가 더욱 절실한 형국이다. <표 3>은 2023년 17개 시·도체육회 일반회계 보조금 재정 현황을 취합한 내용이다.

표 3 2023년 17개 시 · 도체육회 일반회계 보조금 재정 현황 (단위: 백만원)

| 시 · 도 | 총 액<br>(시 · 도 보조금 + 국비보조금) | 시 · 도 보조금 | 총액 대비<br>시 · 도 보조금 비율 |
|---|---|---|---|
| 금 액 | 395,409<br>(평균 23,259.4) | 313,833<br>(평균 18,460.8) | 79.37% |

※ 출처: 충청북도체육회 내부자료(2023년 01월 기준)

둘째, 지방체육회장협의회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상주 직원을 운용해야 한다. 현재에도 시·도체육회회장협의회와 사무처장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회장협의회장과 사무처장협의회장직을 수행하는 시·도체육회 소속 직원이 간사를 맡아 내용을 취합하고 각종 회의와 정보 수집, 교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보다 전문화되고,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도체육회 직원을 파견해 협의회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체육회의 예산,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과 최신 자료의 데이터 정리를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회원종목단체의 사무실 확보와 정규직 직원 채용이다. 지방체육회는 직접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대부분 회원종목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의 행정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다. 사무실 확보의 부재는 종목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보존의 어려움으로 집행부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에 많은 고충이 있으며, 정규직 직원의 부재는 각종 행사 추진과 노하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서 제출 등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전문성을 추구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정규직 직원 채용과 사무실이 한 종목당 각각의 배치가 어려우면 5개 종목당 사무실 배치와 행정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넷째, 지방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상생발전이다. 지방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의 역사를 보면 상호 다른 줄기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물론 현재의 법률에 의해 공공스포츠클럽이 '시·군·구체육회의 가입한 것으로 본다' 는 내용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양 조직이 하나의 라인으로 접목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본다. 모든 지역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를 거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사업 정산서 등을 제출하면 다시 대한체육회까지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서 체육회와 공공스포츠 클럽은 사업비 집행과 정산에 실질적인 상호 영향이 없다.

| 지방체육회 |  | 공공스포츠클럽 |  |
|---|---|---|---|
| 1940년대<br>~2000년 | - 임의단체 -<br>○ 대한체육회 시·도 지부<br>○ 시도체육회 시·군·구 지부<br>(국민체육진흥법제33조)<br>국민생활체육회 지회<br>(생활체육진흥법제7조) | (공공스포츠클럽) |  |
|  |  | 2013. | ○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시작 |
|  |  | 2015. 6. 28. | ○ 사단법인 또는 단체<br>(생활체육진흥법제2조)<br>○ 스포츠클럽육성 및 지원<br>(생활체육진흥법제9조) |
| 2016. | ○ 전문체육, 생활체육 통합<br>(대한체육회 시·도 지회) |  |  |
| 20201. 1. 16. | ○ 민간체육회장 출범<br>(국민체육진흥법제43조의2) |  |  |
| 2021. 6. 9. | - 법정법인 -<br>(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 |  |  |
| (지방체육회) |  | 2022. 6. 16. | ○ 스포츠클럽법 시행<br>(사단법인, 시·군·구 등록)<br>(시·군·구체육회 회원 등록) |

그림 3 지방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 조직 변화

표 4 (종합형)공공스포츠클럽 지자체 운영현황

| 구　분 | 운영 지자체 | 지자체 총수 | 비고 (운영 %) |
|---|---|---|---|
| 내　용 | 서울 마포구 등 105개 | 229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45.85% |

※ 출처: 대한체육회 자료 분석(2022년 기준)

더욱이 공공스포츠클럽의 사업은 시·군·구체육회의 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역 종목의 사업과도 중복된다(유사한 예: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소도시의 경우 한정된 체육시설과, 사업대상이 같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의 사업비 지원시기가 5년으로 한정된다면 그 이후에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내 체육단체 중에서 자체 수익사업의 성공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한 체육단체가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불행이도 드물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성공한 지역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원, 지역 체육회와 종목 등 원만한 관계 형성 속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성공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정부는 지속적인 공공스포츠클럽의 지원과 공공스포츠클럽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체육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공공스포츠클럽이 한정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 공공스포츠클럽과 지방체육회 사업범위

| 구　분 | 공공스포츠클럽 | 지방체육회 |
|---|---|---|
| 근　거 | 스포츠클럽법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
| 내　용 | ○ 스포츠클럽/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연계<br>○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br>○ 연령/지역/성별특성반영 스포츠프로그램운영<br>○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 ○ 가맹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지원<br>○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br>○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br>○ 선수양성,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사업<br>○ 체육인의 복지 향상<br>○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br>○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br>○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br>○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연계사업<br>○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br>○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민선 1기

다변화되는 사회정책 속에서 지방체육회의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에 다가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법률개정을 통한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대내·외의 공신력이 신장되고, 체육회의 대표 즉 민간 회장의 활동으로 도지사와 협의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단, 민선 1기 회장 취임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회장직에 걸맞은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며, 체육단체 통합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업, 불안정한 재정, 양단체 인사의 융합 등 어려운 환경이었다. 또한, 다수의 체육행사의 취소로 체육회장직의 보람과 나가야할 방향 설정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민선 1기 회장들은 많은 기대와 역할을 뒤로하고 아쉬움과 내가 왜 회장을 했지? 하는 생각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 지방비 보조 의무화, 국비 지원 제도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민선 8기 지방선거시 후보자에게 바라는 체육 공약 채택 건의 등 관선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지방체육회장이 앞장서 추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민선 2기 지방체육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초를 다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건의(도종환 국회의원실), 우: 민선 8기 지방선거 후보자 건의

그림 4 민선 1기 체육회장 활동

또한, 대한체육회의 노력이다.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지방체육회 민선 1기가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지방체육회장과의 많은 간담회와 의견 청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의 만남의 자리 마련 등이 그 예이다. 체육인의 복지와 인권향상 등 지방체육회가 홀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의 관계 차원에서 앞으로의 전망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공조의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본다. 제가 근무한 최근 20년 동안은 그렇다. 일부분일수도 있지만, 전국체전 종목과 세부종목의 확대 및 축소는 참가하는 시·도체육회의 의견보다는 중앙종목단체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다.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시·도 직원으로 체감은 그렇다. 현재는 과거보다 많은 부분에서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의 관계가 유기적이다.

한편의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분위기는 바로 대한체육회장 선거권이다. 과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중앙종목단체만이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

회장의 선거에 '투표권을 달라' 는 건의를 수차례 했다. 시·도 지부가 아닌 회원으로 가입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었고,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관심의 증대는 이 부분에서 일조를 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전에는 회장이 대한체육회와 중앙종목단체만 있었다. 시·도 체육회는 시·도지사가 회장을 수행하였지만 회장이기 이전에 자치단체장이었다. 대한체육회장이 시·도지사를 볼 수 있는 시간과 횟수가 많지 않았다. 이제 시·도체육회장도 민선시대를 개막해 대한체육회장과 시·도체육회장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며, 시·도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 이사, 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의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하여 유대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시·도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시·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 서운하다고 할 상황은 시·군·구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그러하다고 할만한 상황이 유사하다.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가 돈독해지는 시대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의 관계도 비슷하다 판단한다. 더욱이 지방체육회의 힘은 시·도체육회가 아닌 시·군·구체육회이다. 시·도 지역별 시·군·구체육회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실업팀 육성과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는 공통분모를 찾아 더욱 공생을 할 수 밖에 없다.

## Ⅲ. 결론

지방체육회의 최근 체육정책 변화는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체육단체 통합, 민선체육회장 시대개막, 법정법인 출범 등 하나의 정책이 자리잡기도 전에 다각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최근 3년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민선 1기 시기에 대한체육회 등 유관 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업으로 민선 2기를 나름 착실하게 준비했다. 어색했던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2기 때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중앙정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지자체,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윤리센터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체육회장 선거의 후유증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는 17개 시·도체육회 진단 컨설팅을 2022년에 시행하였다. 앞으로 지방체육회의 정책과 사업진단,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과 연계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와의 관계 및 역할 분담 / 지역체육의 발전,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 운영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및 전문성 강화 / 체계적인 조직운영 /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호 강화)가 지역별 보편화된 체육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중앙정부는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안내하고, 제·개정 여부를 스크린했으면 한다. 법률에 근거한 조례의 제·개정은 지자체의 선택이 아닌 강제성을 띤 꼭 해야만 하는 행정이다. 스포츠 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자체의 의무 사항은 시·군·구 조례까지 제도화 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여도 법률로 정해진 체육 정책이 바른 것이라면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지방체육에 대한 많은 정책 수립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사업비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었으면 한다. 지방체육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그 증감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

며, 협의되어 조정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대한체육회 지원 인건비 확대 → 지방비는 대한체육회 지원금을 제외한 인건비 지원 → 제외된 지방비 인건비 사업비로 미전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체육회의 취약한 사업비 확대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선 2기에서 안정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당위성과 논리, 법 체제 개선에 대한 논문이 많이 투고가 되었으면 한다. 체육회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당위성 대립은 시소게임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면 이기는 것이다. 하계 워크숍에서는 국회의원 초청도 당부드린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봉합은 근본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21대 국회도 하반기이다. 국회의원과 국민의 갑을 관계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바뀐다. 지금은 우리가 갑이 되는 시기이다.

앞으로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에서 지방체육회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 평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동계워크숍

2023년 02월 16일(목) 14:00~17:00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B1 강의실